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51620(본소), 2016가합52064(반소) 판결
[정산금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 종결 2016. 6. 9.

판결 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13,391,991원 및 그 중 76,073,798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37,318,193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각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241,920,709원 및 그 중 233,920,7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다음날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46,65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남양주시 E 전 79㎡에 관하여 2015. 1. 18.자 및 2015. 1. 2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남양주시 F 전 405㎡에 관하여 2015. 1. 18.자 및 2015. 1. 2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계약의 경위 등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5. 29. '피고 회사가 남양주시 G 일대에 건축할 단독주택(전용면적 약 35평)과 그 대지 약 100평(도로에 대한 공유지분을 포함한 면적)에대한 소유권을 대금 400,000,000원에 원고 A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8.경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면적을 총

143.25평(전용 124평, 공용 19.25평)으로 하고, 그 토지 지상에 전용면적 45평(주차장,창고는 건축면적에서 제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주되, 총 대금을 578,000,000원으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① 피고 회사가 제공할 토지를 원고들이 직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과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2차 계약의 약정을 이행하지못할 경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D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2013. 8. 2. H으로부터 남양주시 I 전 411㎡를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1 '전용 411㎡(124평), 공용 70㎡(21평) 분양면적 473.56㎡(145평)', 2 '매매대금(2억)에는 도로지분 약 21평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4. 5. 29. 피고 회사가 남양주시 I 토지 지상에 '대지면적 194평', '건축면적 77평[지상 62평, 지하 15평(주차장, 보일러실 및 창고)]',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을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그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되, 그 대금은 이 사건 1, 2차 계약의 대금을 포함하여 총886,600,000원(=806,000,000원 × 1.1)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3차 계약의 대금 886,600,000원은 대지와 관련된 금액490,820,000원(=2,300,000원 × 194평 × 1.1)과 건물 공사와 관련된 금액 395,780,000원(=886,600,000원 - 490,82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한편, 위 490,820,000원에는 측량 비용, 토목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건축설계 인허가 관련비용, 설계 외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1, 2, 3차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8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들이 H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은 이 사건 2, 3차 계약의 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등

원고들은 이 사건 1, 2, 3차 계약에 따라 2013. 11. 8. 남양주시 I 전 411㎡에 관하여, 2014. 7. 30. J 전 12㎡ 및 K 전 104㎡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남양주시 I 전

411㎡는 I 전 308㎡, E 전 79㎡, L 전 24㎡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차 계약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라 이행한 부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공사한 건물 중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다음 금액의 합계 241,920,709원(=74,460,000원 + 8,000,000원 + 120,811,252원 + 38,649,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1) 단독주택의 대지에 관한 초과 지급 금액 74,460,000원(=(1) - 2 - 3)

① 447,350,000원(=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지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② 337,040,000원[=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128.26평)하였거나이전할 예정(도로 18.28평)인 대지 면적 146.54평(=128.26평 + 18.28평) × 2,300,000원]

③ 35,850,000원[=하천구역에서 해제된 E 전 79㎡(23.9평) × 1,500,000원(=2,300,000원에서 대지 조성비용을 공제한 금액)]

2) 원고들이 피고 회사 대신 지급한 설계 및 인·허가 관련 비용 8,000,000원

3) 단독주택 기성 공사대금 관련 초과 지급 금액 120,811,252원(=1 - 3)

① 원고들이 지급한 공사비 358,650,000원[=806,000,000원 - 447,350,000원(=대지관련 지급액)]

② 기성고 비율 66.315%

③ 기성 공사대금 237,838,748원(=358,650,000원 × 0.66315, 소수점 이하 반올림)

4) 피고 회사가 공사한 단독주택 중 완성된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38,649,457원

나. 판단

1) 이 사건 1, 2, 3차 계약의 성격 등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 2, 3차 계약으로 ① 피고회사가, ⑦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건축면적 77평(지상 62평, 지하 15평)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④ 위 단독주택의 대지 194평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되,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⑦ 위 단독주택의 대지 194평의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으로 490,820,000원($=194\text{평} \times 2,300,000\text{원} \times 1.1$)을 지급하고, 4) 위 단독주택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으로 395,780,000원($=886,600,000\text{원} - 490,820,000\text{원}$)을 지급하며[2의 7, ④ 대금 합계 886,600,000원($=806,000,000\text{원} \times 1.1$)], ③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위 1의 5, ④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806,000,000원은 이 사건 3차 계약의 총 대금 886,600,000원 보다 적은 금액이다. 위 806,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446,200,000원($=806,000,000\text{원} \times (490,820,000\text{원} \div 886,600,000\text{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59,800,000원($=806,000,000\text{원} \times (395,780,000\text{원} \div 886,600,000\text{원})$)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3차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1,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3차 계약의 정산, 즉 원고들이 초과 지급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 및 단독주택 단지의 공용 도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요청하였다.
- 피고 D은 이 사건 3차 계약 중 미이행 부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산 방법에 대하여 원고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3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계약 중 미이행 부분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4. 24.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에 관한 초과 지급 금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 194평에 대한 매매대금이 490,820,000원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4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로 남양주시 I 전 308㎡, J 전 12㎡, E 전 79㎡, L 전 24㎡, K 전 104㎡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L 전 24㎡는 단독주택 단지 내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전할 예정인 단독주택 단지의 공용 도로 지분이 32.30평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대지의 면적은 184.46평[=152.16평1)(=308㎡+ 12㎡ + 79㎡ + 104㎡) + 32.30평]이 되고, 대지 면적 184.46평 상당의 매매대금은 466,683,800원(=184.46평 × 2,300,000원 × 1.1)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46,200,000원은 위 466,683,800원 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들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거나 이전 받을 예정인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남양주시 E 전 79㎡에 관하여 대지 조성비용을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그 토지는 평당 1,5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E 전 79㎡에 관하여도 피고 회사가 대지 조성비용을 투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설계 및 인·허가 관련 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에 관한 토지 조성비에 측량 비용, 토목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건축설계

인허가 관련비용, 설계 외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로 그 소유권을 이전 받았거나 이전 받을 예정인 대지의 면적 184.46평 상당의 매매대금이 466,683,800원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4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설계 및 인·허가 관련 비용 8,000,000원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매매대금 446,200,000원을 합한 454,200,000원(=8,000,000원 + 446,200,000원)이 원고들이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로 그 소유권을 이전 받았거나 이전 받을 예정인 대지의 면적 184.46평 상당의 매매대금 466,683,80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본소 청구도 이유 없다.

5) 기성 공사대금 관련 초과 지급 금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내용을 확정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이 395,780,000원인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59,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한 부분의 기성고비율은 67.468%[(338,098,115원) ÷ (338,098,115원 + 163,021,295원)]이고, 그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267,024,850원(=395,780,000원 × 67.468%, 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사실이 인정된다(대체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된 보일러 공사 부분은 완성된 부분에 포함되지만, 계약

내용과 달리 시공된 담장 공사 부분은 완성된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하층 및 지상층의 추가 공사부분은 기성고 산정에서 제외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92,775,150원(=359,800,000원 - 267,024,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독주택의 공사 중 피고 회사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채권 16,701,35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구하는 위 92,775,150원의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3차 계약에 따른 공사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과 지상층에 추가 공사를 한 사실,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이 16,701,352원인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3차 계약은 설계 및 시공 일괄도급방식의 계약이므로 피고 회사가 설계 면적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였더라도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3차 계약이 설계 및 시공 일괄도급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양 채권은 이 사건 3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4. 24. 상계적상에 있었다. 위각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들의 2016.5. 13.자 준비서면이 2016. 5. 16.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92,775,15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회사의 추가 공사대금채권 16,701,352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그 결과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76,073,798원(=92,775,150원 - 16,701,352원)이 남게

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6,073,7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8.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 중 피고 회사가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37,318,193원(=38,649,457원 - 1,331,264원2)의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2. 26.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 중 완료된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7,318,1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37,318,19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당시에는 하자보수에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다가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처음으로 하자보수에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13,391,991원(=76,073,798원 + 37,318,193원) 및 그 중 76,073,798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37,318,193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공사 도급 계약은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원고들이 지급하기로 한 실비 정산 계약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단독주택의 공사에 401,280,468원을 투입하였고, 원고들이 약정 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358,650,000원이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42,630,468원(=401,280,468원 - 358,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이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중 남양주시 K전 104㎡는 F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 F 토지의 분할을 위한 비용으로 4,023,33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4,023,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2015. 1. 18. 및 2015. 1. 29. 남양주시 E 전 79㎡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은 원고 A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의 아내인 N 명의의 남양주시 F 전 405㎡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 A은 2015. 1. 18. 및 2015. 1. 29. 남양주시 F 전 405㎡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남양주시 F 전 405㎡에 관하여 2015. 1. 18.자 및 2015. 1. 2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실비 정산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3, 을 제8,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공사 도급 계약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실비 정산 계약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인정할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토지 분할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 중 일부인 남양주시 K 전 104㎡가 F 전 534㎡에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남양주시 K 전 104㎡의 분할 등기에 관한 비용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

3) 남양주시 E 전 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5. 1. 18. 및 2015. 1. 29.남양주시 E 전 79㎡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

4) 남양주시 F 전 40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2015. 1. 18. 및 2015. 1. 29. 남양주시 F 전 405㎡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 안현정, 판사 박상곤

1) $=503\text{m}^2(308\text{m}^2 + 12\text{m}^2 + 79\text{m}^2 + 103\text{m}^2) \div 3.305785$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담장 공사 부분이 기성 공사 부분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담장을 쌓는데 필요한 비용 1,331,264원은 하자보수 비용에서 제외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